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1 육·해상 지도·점검 계획

□ 추석 명절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중점 지도·점검

- 명절맞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승선조사 강화,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에 대한 유통·판매 집중점검
 - * (기간/주관) 추석연휴 전 2주간(예정) / 동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선 및 육상단속반)
 - (대문어) 600g이하('21.1.시행) 명절 제수용 음식 소비로 관리 강화
 - (대게, 붉은대게) 금어기·체장미달 및 암컷 포획·유통·판매 행위
 - * 대게 : 6.1~11.30(131°30'E 이동수역은 6.1~10.31.), 금지체장 9cm
 - (금지체장) 금지체장 어종* 불법 포획·유통·판매·보관 행위
 - * 고등어(21cm), 광어(35cm), 대구(35cm), 민어(33cm), 붕장어(35cm), 참조기(15cm) 등

□ 접경수역 日EEZ 침범조업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지도·단속

- (침범조업) 한·일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서남구저인망·근해자망 등)에 대한 승선조사 강화와 日EEZ 침범조업(걸치기) 행위 강력 단속
 - *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의 세계측지계(WGS-84) 사용, ①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혼용으로 인한 항행위험 주의, ②동경측지계 어장위치(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어업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위치발신장치)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상 어선위치발신장치 미표출 어선을 우선으로 집중 지도·점검
 - 위치발신장치(D-MF/HF, AIS, VHF-DSC) 미작동 및 일시 전원 차단, 안테나 분리, 주전원 라인상 스위치 설치 등 행위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지도 · 점검**

- (잠수기) 어선위치발신장치(VHF, V-pass 등) 및 CCTV 정상작동(영상 저장), 흡입기(8마력), 지정위판장 외 위판 등에 대한 육·해상 점검
- (소형선망) 부속선 완화 어선 금지구역 내 조업 모니터링

□ **TAC 대상어종 금어기 · 금지체장 적용 유예 대상어선 점검**

- TAC 어종 중 금어기·금지체장을 별도로 적용받는 어업을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 정상작동과 조업실적 보고 등 이행사항 점검

《적용 어종(업종) 및 내용》

어 종	업 종(어선수)	금어기	금지체장
고등어	대형선망(18척)		전장 21cm
도루묵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38척)		전장 11cm
붉은대게	근해통발(36척)	7.10 ~8.25	
키조개	제1·2 잠수기(120척)		각장 11cm

* (적용기간) 2023. 3. 3. ~ 2026. 6. 30.

□ **어구실명제 지도 · 점검**

- 어구의 표시 방법(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관련)

1.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浮標)·부자(浮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순서대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예시)

어구 소유자의 성명(연락처): ○○○(000-0000-0000)

허가어선의 명칭(어선번호): ○○○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 개수(통수, 틀수 등)-해당 어구의 일련번호**]

* [사법처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어업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입법 예고

2 어선법

□ 장거리위치발신장치(D-MF/HF)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단속

- 해상디지털 통신장비 설치사업 2차 대상업종*의 의무설치기한(23.7.31)이 종료됨에 따라, D-MF/HF 미설치** 및 미작동***에 대한 지도·단속

* 근해자망, 근해장어통발,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과

□ 부산·울산 일원 주요 항·포구 「어선법」 위반사항 점검

- 어선검사 이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불법 증·개축, 검사 대상장비 탈거·변경 등)하여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 시 사법처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어선안전조업법

□ 주요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이행

*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함

- 「어선안전조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

- 기상특보(태풍·풍랑·폭풍)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 구명조끼 의무 착용

-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준수

* 1일 1~3회 위치보고+풍랑특보(12시간 마다), 태풍특보(4시간 마다)시 추가 위치 보고

4

면세유

□ 지도점검 계획 : 9월 중

- 지역/대상 : 포항 / 관리기관, 선박·시설 등 공급대상 사용자
- 주요 점검 사항 : (해수면) 관리기관 공급중지 기간 중 부적정 공급 여부, 사용자의 공급대상 존재 여부 및 낚시어선업 공급요건 충족 여부 등 (기타) 구비서류 관리내역 등

< 기타 면세유 사용금지 철저 요청 >

- '15. 7. 1.부터 과징금 납부해도 해당 불법어업 어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기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8항
- 양식장 관리선 소유한 어업인이 본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 양식장의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어선 이용(승인) 시 사용불가('용도 외 사용' 해당)

□ 관리기관·어업인·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 : [붙임2] 참고

5

낚시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및 낚시제한 기준 위반행위 지도·단속

-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영해) 내에서 영업 하여야하며(제27조), 낚시객을 어선원으로 위장한 영업 행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포획 금지체장·체중, 포획 금지기간 등 준수 및 낚시승객 대상 점검·지도
* [과태료] 「낚시관리법」 제7조에 따라 80만원 부과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과태료] 「낚시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어선법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설치 및 상시작동

어선은 **설치의무대상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이를 **상시작동**해야 합니다.

※ 고장·분실 시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기준 |

2톤 미만	V-PASS, VHF-DSC, e-Nav 선박단말기, AIS(4개 중 1개 선택 설치)
2톤~10톤 미만	VHF-DSC, e-Nav 선박단말기 MF/HF 또는 D-MF/HF(모두)
10톤 이상	VHF-DSC, AIS, e-Nav 단말기, D-MF/HF(모두)

무등록 어선의 사용 금지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원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등록 어선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명, 선적항은 규정에 맞게 표시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외부에 **선적항·선명을 표시(10cm 이상)**해야 합니다.

※ 선명선적항 미표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은폐·변경·제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선안전조업법 주요내용



출입항신고 내용 변경(변동 있을 시)

승선원명부, 조업 업종, 평균조업일수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기관(관할 해경 파출소)에 신고해 주세요!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 제한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명조끼 착용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의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해요.

위와 더불어,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2인 이하)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시행 2025. 10. 19>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구명조끼 미착용자와 구명조끼를 착용 하도록 하지 않은 선장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기와 사용 목적에 맞는 어선검사

어선은 그 설비,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만재출수선의 표시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해요.

건조검사	최초 건조 시
정기검사	최초 항행 시 또는 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수검 (제1종, 제2종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 시
임시검사	어선 개조, 검사증서 내용 변경 시

어선검사 이후 어선의 상태유지(불법 중·개속)

어선검사를 받은 후 선체·기관·설비를 변경하거나 설치 하면 안되고,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주요 불법 중·개속 위반유형>

- ▶ 조타실 뒤 바람막이 또는 선원휴게공간 임의증설
- ▶ 선축 & 선미 부력부 임의증축
- ▶ 선수 조업준비공간 바람막이 공간 임의설치 등

무등록 어선중개업의 금지

어선에 대한 매매·임대차 중개를 하려는 사람은 어선 중개업의 등록을 해야 해요.

어선을 중개거래로 사고팔 때는 중개인의 **어선중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어선 안전점검 자가 진단



1. 선체 점검	발생	미발생
① 선수, 선축, 선미의 균열이나 구멍		
② 상갑판, 양현 측판 손상이나 균열		
③ 씨앵커·아구·로프류 정리, 고박 불량		
2. 조타실 점검	양호	불량
① 조타기, 클러치 레버 작동		
② 플로터, 레이더 등 항해장비 작동		
③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가스압 등		
3. 통신설비 점검	양호	불량
① VHF-DSC, SSB, D-MF/HF 등 무전기 송수신상태		
②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 (V-PASS, e-Nav, AIS, D-MF/HF 등)		
4. 기관실 화재 예방	양호	불량
① 누유, 누수 및 가스누출 여부		
② 기름길레 등 인화성 물질 관리상태		
③ 화재탐지경보장치 정상 작동		
④ 기관실 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		
⑤ 기관실 내 소화기 비치 여부		
5. 엔진 시동 점검	양호	불량
① 실제 연료량과 계기판의 눈금 일치 여부		
② 연료탱크에 물고임 여부		
③ 냉각침수량 및 해수 흡입밸브 개폐 여부		
④ 주기판과 엔진벨트 볼트 체결상태		
6. 엔진 시동 후 점검	양호	불량
① 표시반 상태(회전계, 전류계, 온도계, 유압계)		
② 이상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		

□ 주요점검 사항

점검 대상	점검내용	제재 사항
관리 기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어업 인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 「수산업법」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석유 판매업자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안심 ① 국내산 수산물 안전합니다

꼼꼼한 3중 방사능 검사 체계



국제 대비 엄격한 방사능 검사기준

식품내 방사성 세슘(¹³⁴Cs+¹³⁷Cs)기준

EU	미국	CODEX	한도
1,250Bq/Kg	1,200Bq/Kg	1,000Bq/Kg	100Bq/Kg

* 100Bq/Kg 기준은 위 X선 검사 1회 받는 것의 2.6% 노출량 수준

국제 대비
10배 이상
엄격

2011년~지금까지 약 3만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적합

안심 ② 문제있는 일본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수입 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생산 모든 수산물

꼼꼼한 방사능 검사



수입 신고별
매건 방사능 검사

철저한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 살아 있는 생물 전품목
- 음식점 20개 품목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을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 수산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